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0. 11.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05호, 2010. 11. 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방안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동반성장과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 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다만, 이 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경우 비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②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하 "대기업" 이라 한다)은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대기업은 협약 체결후 새로이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협력사에 대해서도 협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협약의 구분) ①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협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인 하도급공정거래질서 유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
2.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 대기업과 하도급법상 비수급 사업자인 협력사가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유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

② 대기업과 협력사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와 비하도급거래를 동시에 유지하는 대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및 비하도급 협력사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하도급거래와 비하도급거래를 동시에 유지하는 대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및 비하도급 협력사에 대하여 각각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⑤ 비하도급거래 관계만 유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협약 당사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② 협약 당사자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항

③ 협력사의 협력사(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협약 당사자의 지원사항

④ 협약절차기준의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공정위 제출 등 기타 협약 관련 사항

제6조(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하도급 법규의 준수의지

②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공정위가 제정(2006. 6. 2)한「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 및 운용

③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1.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ㅇ 계약체결 및 변경시 서면계약서 교부(구두계약의 금지)

ㅇ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인의 반영 등 합리적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납품단가 조정방법 및 절차 도입 등)

ㅇ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2.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가이드라인

ㅇ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객관·공정성 제고

ㅇ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 절차 및 결과의 사전공개

ㅇ 등록업체에 공평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등

3.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ㅇ 원사업자의 자율적 법위반 감시 시스템 구축(심의위원회 구성)

ㅇ 일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ㅇ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

제7조(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내용은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 또는 증가된 것이어야 한다.

1. 금융(자금)지원

금융(자금) 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원자재·장비구입비, 생산자금, 설비투자비, 기술(개발·연구)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것(거래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직접지원 : 대기업이 직접 협력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준금리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연구개발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비 등)

나. 간접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협력사의 거래내역·보증·담보 등의 제공 또는 추천을 통하여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의 여신을 제공(대출) 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대기업 - 금융기관 - 중소기업간의 약정을 통한 네트워크론 등)

다. 혼합지원 : 대기업이 직접 금융기관 등에 예금 또는 펀드를 조성하거나, 계열사의 예금 또는 펀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로 여신을 제공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상생협력펀드 조성, 펀드공동이용 등)

라. 특별지원 :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하거나, 계열사가 출연한 보증기금을 이용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사의 협력사에게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하는 것(상생보증기금 출연 등)

2.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조건 개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조건 개선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대금지급기일(또는 주기)의 단축 또는 지급횟수의 증가, 선급금의 지급 및 결제수단(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어음결제 등)별 지급비율의 증감 등을 말한다.

이때 결제수단별 지급비율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결제수단별 지급액의 비율을 말한다.

또한, 대금지급 기일이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구매대상)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대기업과 협력사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날)을 기준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예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등)

3.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보호

기술(개발)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이전, 특허권 제공, 공동연구개발 및 신제품·국산화 개발지원 등의 지원을 말하며, 기술보호는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 등 지원

교육·훈련지원이란 대기업이 협력사의 임직원에 대한 경영교육, 원가절감 교육, 기술교육 및 노무교육 등과 같은 On-Off Line교육, (사내)대학 등과 같은 교육시스템을 통한 수급사업자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말하며, 인력지원이란 대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자기의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여 중견 관리자, 전문엔지니어 등의 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하거나 협력사의 요청에 의거 이들을 임용하는 것 등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교육훈련·인력지원으로 본다.

5. 위탁 관련 정보 통보시스템 도입·운용

위탁 관련 정보 통보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위탁 계약을 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 예정사실·물량·시기 등 위탁과 관련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협력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사항

기타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사항이란 "금융(자금) 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지원·보호, 교육훈련 및 인력지원" 이외의 내용으로서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가.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 :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방지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상호간의 노력, 제도적 장치 마련·운용 등(윤리경영시스템 운용 등)

나.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기타지원 : 경영컨설팅, 사무자동화, 홍보기법 및 활동지원, 6시그마 컨설팅, 협력사 원자재확보(구매대행 및 직접공급)지원, 선급금의 지급, 생산성향상 및 물류혁신 기법 전수, 에너지절감,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협력사제품 마케팅지원 등

다.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력사항 :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적극적 단가조정

7.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영

대기업은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업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용한다.

8. 구매담당 임원에 대한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시스템 도입

대기업은 구매담당 임원평가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

②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내용의 이행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공정·품질·물류개선 등
3. 대기업의 윤리규정 준수
4. 기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제8조(2차 협력사 지원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협력사의 협력사(대기업의 2차 협력사)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협력사(1차)는 대기업과 체결한 '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협력사(대기업의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동반성장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② 협력사(1차)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협력사(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납품단가 조정정보를 내부협력 채널을 통해 자신의 협력사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④ 대기업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제9조(비하도급 거래관계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 기준) ① 대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아닌 협력사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 등을 준용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가 대기업이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가 아닌 협력사로부터 원재료, 부품, 상·제품 및 용역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관련 법규 및 상생협력법의 성실한 준수방안

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만료시 당사자간의 합의지연,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원내용 미확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 이라 한

다)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를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에 대한 이행 평가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정위의 지원사항) ① 공정위는 대·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대기업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1. 협약체결 절차·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
3. 협약이행 평가
4.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 제정·보급
6.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제12조(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서) 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 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공정위는 대기업이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맞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대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기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위는 별지와 같은「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이행 평가) ① 대기업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한다. 이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기준하여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3.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체결 대기업 및 협력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서면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

③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협약내용의 충실도

협약내용의 충실도는 협약서 내용(협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협약서 및 협약 세부이행 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1) 협약절차기준 및 표준협약서 내용의 반영 정도

(2)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 및 운용 방안(세부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

(3) 협력사에 대한 상생지원 계획의 적정성(지원 항목별 적절한 배분, 지원내용의 협력사 제공을 위한 합리적 기준 등)

(4) 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나. 협약내용의 이행도

협약내용의 이행도는 협약 당사자의 협약내용의 이행실적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1. 3대 가이드라인 도입 여부 및 운용 실적

2.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상생지원 내용 이행실적

3. 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방안 이행실적

다. 대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 도입·운용 및 기타 상생협력 사항 추진실적

라.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

마.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발생여부

바. 대기업의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④ 대기업이 협약기간 중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협약평가 완료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후 합의일 기준)에는 소정의 감점을 한다. 이 경우에 하도급법 이외의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 전력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⑤ 대기업이 협약기간 중 또는 협약이행 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법인 또는 임·직원의 비리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한 등급 강등할 수 있다.

⑥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 별표 1.의 점수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협약내용의 충실도 및 이행도에 대한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당초 협약내용에 반영된 추진계획 항목에 대한 이행율에 따라 해당 항목의 충실도 최고 점수의 50%까지 감경한다(이행율 0인 경우 50%를 감경)

2. 당초 협약내용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과정에서 추가로 항목을 반영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충실도에 대한 최고 점수의 60%까지, 이행도에 대한 최고 점수의 80%까지 각각 가산할 수 있다.

3. 영위 업종의 특성상 "2차 협력사 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등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반영 및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⑧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사 만족도 조사) ① 공정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하여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 만족도 조사대상 협력사는 대기업의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30% ~ 50% 범위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③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협력사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용) ①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운용한다.

②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임원 각 1인, 변호사 1인, 교수 1인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 1인과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하도급총괄과장 및 하도급개선과장 등 10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2010. 12월말까지로 한다.

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협력사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⑥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

⑦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우 수	90점 이상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표창 수여(위원장)
양 호	85점 이상	-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 표창 수여(위원장)

② "현금성결제 비율 90% 이상"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운용과 관련한 과징금 감경은 이 협약에 의한 인센티브와 별도로「하도급 과징금 고시」Ⅳ. 2. 나(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 (2) 내지 (4)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하도급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우수" 및 "우수" 등급 해당 대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두레넷 참여 정부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공정위가 두레넷 참여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에 시행한다.

⑤ 직권조사의 범위는 업종별실태조사 등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조사로서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부당단가인하신고센터 접수내용, 익명신고 등 포함)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조사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단의 내용을 공정위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기업의 개별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보호, 교육훈련, 기타 경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

㉡ 대기업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 평가대상 대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 협력사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

㉥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동의를 말한다.

제18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협력사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협력사를 지원하는 행위가「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9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공정위는 협약체결 대기업이 협약이행 평가결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후에 당해 대기업이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을 취소한다. 다만, 인센티브 제공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평가등급만 취소한다.

부칙 <제105호, 2010. 11. 1.>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10. 11. 1. 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